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세부운영지침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제정 2022. 5. 30. 지침 제367호

개정 2023. 6. 16. 지침 제3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자보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하“법령등”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6.>

1. “자동차보험상근심사위원(이하“상근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4조 및 제11조와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계약직 운영세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근무형태에 따라“전임 상근위원”과“겸임 상근위원”으로 구분한다.
2. “전임 상근위원”이라 함은 그 근무형태가 주간 근무일수 전체를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겸임 상근위원”이라 함은 그 근무형태가 주간 근무일수 중 일부를 일일 또는 반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동차보험비상근심사위원(이하“비상근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8조제

1항에 따라 원장이 비상근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사위원”이라 함은 제1호 및 제3호의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을 말한다.

5. “자문위원”이라 함은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심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자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하부 위원회의 설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보심사위원회에 심사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이하“자보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임명한다.

② 자보심사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 소집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심사조정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보심사위원장이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소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16.>

제6조(심사위원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은 심사, 수가 또는 기준 업무와 관련된 법령등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및 이의제기 심사, 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인정여부에 관

한 사항 및 합의 방식의 심사결정을 요하는 사항

4. 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과, 적정 진료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5.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의 설정 및 변경
6. 심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업무
7. 그 밖에 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전임 상근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의약계단체와 관련되는 직무 등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2장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등

제7조(상근위원의 임명) 원장은 자보심사위원회의 상근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직제규정」 제4조 및 제11조와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계약직 운영세칙」에 따라 임명한다.

제8조(비상근위원의 위촉) ① 원장은 자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근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격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②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자격에 따라 의약계단체장, 의약분야별 전문학회장, 보험사협회장, 소비자단체장으로부터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적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추천 단체의 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된 자가 자격기준, 진료과목 등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의약계단체장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협회장으로 하며, 소비자단체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으로 하며, 보험사협회장은 “손해보험협회장”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당연퇴임)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의료법」 제65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때

제10조(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원장 또는 자보심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3. 전임 상근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근한 때
4. 겸임 상근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근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때
5.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 참여하지 않거나, 위원

사퇴의사를 표시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 기소는 제외한다)된 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자보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임명·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근심사위원 3명 : 위원장 1명, 의과 1명, 한의과 1명
2. 비상근심사위원 10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1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조정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구성은 각 단체가 추천한 의사 5명, 한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 의사 1명
2. 대한병원협회: 의사 1명
3. 대한한 의사협회: 한의사 1명
4.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사 1명
5. 손해보험협회: 의사 2명, 한의사 2명
6. 소비자단체: 의사 1명, 한의사 1명

③ 자보심사위원장은 분야별 심의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16.]

제13조(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 심사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지침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6.16.>
3. 심사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의 의견 조정 및 위원장이 심사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5. 합의방식의 심의결정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은 각 분과별 회의 개최 시마다 자보심사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개정 2023.6.16.>

1. 제1분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제2분과 :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치과
3. 제3분과 :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비뇨의학과
4. 제4분과 : 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약제
5. 제5분과 :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6.>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건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심사적용에 있어 새로운 심사기준(지침) 설정을 요하는 사항의 검토
3. 심사지침(안) 심의 및 심사조정위원회 보고
4.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례 관한 사항
5. 기타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소위원회는 자보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소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은 회의 개최 시마다 안전에 따라 자보심사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17조(전문소위원회의 기능) 전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자보심사위원간 의견 조정 및 자보심사위원장이 자보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심사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나 심사 방법의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조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운영

제18조(자보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위원 정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원장 또는 자보심사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보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해당 안건을 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종전의 각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및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한 결과(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안건 이외에 한한다)는 자보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는 자보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각 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자보심사위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자보심사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시 해당 분과 안건과 관련이 있는 10명 내외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하여 확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⑨ 각 위원회 회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조정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의 추천을 받은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대체

위원을 사전에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기피·회피) ① 자보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서 제척된다. 다만, 심의내용이 새로운 의·약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3.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보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안전에 대해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6.16.]

제2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자보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상정 안전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심사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사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 소속 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되,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의료기관명 또는 대표자명을 표시하거나, 수진자 성명 등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자 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관련 전문가, 관련 학회, 의료기관, 민원인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자료 또는 의견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사례결과 등의 공개) ① 자보심사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 또는 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동차보험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의 범위는 자보심사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사례 결과의 공개는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나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는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진료수가의 심사 및 이의제기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사항의 적용시기)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원장이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심의사례의 경우에는 심의된 날
2. 제13조제1호에 따라 심사지침 설정 및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서 정하는 날

제26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위원장은 진료과목, 세부 전문분야 별로 위촉한 심사위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7조(심사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① 원장은 심사위원이 수행한 심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기준(지침)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상근위원의 복무) ① 전임 상근위원의 보직과 근무일·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또는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

② 겸임 상근위원의 경우 반일 단위 근무가 가능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30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지침 제367호, 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지침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지침 제399호, 2023. 6. 16.>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세부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2. 회의일시(심의기한):
3. 심의안건:
4. 안전별 심의의견

연번	안 건 명	심의 의견		사유
		인정	불인정	
1				
2				
3				
4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위원

인(서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표

1. 회의명:
2. 회의일시(심의기한):
3. 심의안건:
4. 주요 심의의견

연번	성명	주요 의견
1		
2		
3		
4		
5		
6		
7		
8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세부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심의 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위원회 서면심의서 각 1부.

년 월 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임신청서 (제18조제9항 관련)

1.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현 근무기관 및 직위:
- 연락처:

2. 대리참석 사유

3. 대리인 참석 위원회

- 회의명 :
- 일시 :
- 주요안건 :

위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사조정위원회 위원

(서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추천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상 습득한 정보(자료) 및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직무수행 중 작성한 각종서류 및 전산자료, PC 등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본인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구분	사유	비고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되기 전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되기 전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		

- 주) 1.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 표시(중복표시 가능)
 2. 세부내용 : 제척, 기피 또는 회피관련 당사자 및 구체적인 내용 기재
 3.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 확인서와 함께 서면으로 소명 필요

20

위원 (서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